의안번호	2210939
의 뢰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5. 8. 20.
추계번호	25B336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1항) <신 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25조의2 (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확정한 후 2027년 '제1차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현재 편성 예정인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임
2	안 제25조의2 (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5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1]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2]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취약계층의 범위 및 규모,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방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디지털취약계층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관련 통계가 부재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방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표 1]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2025년)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보급지원	7,100 (국비) 3,830 (지방비) 3,270
	정보접근성 제고	웹·앱·키오스크에 대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제도 정비, 실태조사, 접근성 개선 기술 개발·지원	1,861(국비)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디지털 역량함양 지원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AI·디지털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AI·디지털 보편교육 추진	39,225 (국비) 38,665 (지방비) 560
ICT융합디지털포용 기술개발(R&D)		고령자·장애인 등의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ICT융합 기반 디지털 포용기술·서비스 개발지원	3,600(국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